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7. . .
발 의 자	김정곤 의원 외 7명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김정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 . .

발 의 자 : 김정곤, 강승수, 김복자, 김태근
박교상, 박세진, 최경동, 한성희
의원(8명)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권리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 라. 청소년노동인권개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1조)
- 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 례 안 : 불임

4. 참 고 사 항

가.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불임)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대표자를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

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미시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 구축
2.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실시
3. 청소년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4.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5.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6조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계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
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제4조 각 호 사업의 세부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노동인권개선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청소년노동인권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은 구미시청소년노동 업무담당, 구미시의회,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구미시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운영을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 8. 생략

② 생략

제3조(근로조건을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근로조건을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
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
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
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
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위한 협의회 및 센터 운영 등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안 제7조 ~ 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따른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기에 소요재정의 추계가 어려움
(제4조)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홍상윤(480-6446)